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-282호

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공고합니다.

> 2015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,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(안 별표 45.)

-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등 "승인·거부 등"의 업무*는 이미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, 그 중간과정인 "검토"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위임토록 보완
 - *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·변경등록 및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
- 나. 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(안 별표 4.)
 - 신용조회회사는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조사·분석

업무의 겸업을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나, 의뢰기관(공공기관으로 한정) 및 업무범위의 제한(공공목적 조사로 제한)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아 위임 가능
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(안 별표1, 별표6, 별표11)
 -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및 감독원장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위임 및 자구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, 전화: 02-2156-9634, 팩스: 02-2156-9929, 이메일: council01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(주소 : 100-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)